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인상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5만원 인상 : 월 5만원 → 월 10만원 (안 제8조제3항)

나. 지급연령 제한 폐지 (안 제8조제1항제1호)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구미시”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를 “시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람(만 65세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를 “제9조의 수당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권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수급권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급권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호서식]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0일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u>구미시</u>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구미시(이하 “시”라 한다)</u>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u>구미시(이하 “시”라 한다)</u> 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다만 인근 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보훈단체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u>시</u> <u>에</u> ----- ----- -----. -----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 ----- ----- ----- ----- ----- -----. -----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65세 이상)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시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수당은 매 월말에 수급권자

-----.

1. -----

-- 사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0만원-----.

제9조(수당의 신청) ① -----

사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 제9조의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급대상자

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u>수급권자</u>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 2. (생략)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시장 은 제8조에 따른 <u>수급권자</u>가 사 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 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 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 ----- ----- -----. 1. <u>지급대상자</u>----- -----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 <u>지급대상자</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 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안 제8조제3항)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 (안 제8조제1항제1호)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지급함을 전제로 5년간 소요비용을 추산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구분								
세출	보훈예우수당	시비	2,119,200	2,226,000	2,336,400	2,452,800	2,575,200	11,709,6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구분								
자체수입	시비		2,119,200	2,226,000	2,336,400	2,452,800	2,575,200	11,709,600

5. 부대의견

가. 도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간의 예우·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의 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감 될 경우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이수웅 (054-480-510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보훈예우수당 대상 인원을 2023년 1,100명을 기준으로 연간 5% 증가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 보훈예우수당 산출내역

- 2023년 : 1,100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320,000,000원
- 2024년 : 1,155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386,000,000원
- 2025년 : 1,213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455,600,000원
- 2026년 : 1,274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528,800,000원
- 2027년 : 1,338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1,605,600,000원

2. 보훈예우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소요비용

보훈예우수당 지급연령 폐지에 따른 신규 대상 인원을 2023년 666명을 기준으로 연간 5% 증가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 보훈예우수당 산출내역

- 2023년 : 666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799,200,000원
- 2024년 : 700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840,000,000원
- 2025년 : 734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880,800,000원
- 2026년 : 770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924,000,000원
- 2027년 : 808명 × 월 100,000원 × 12개월 = 969,600,000원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안 진 희
	담 당	이 정 화
	담 당 자	이 수 웅 (480-5103)